7. 소송진행상의 일반적 유의사항



원고의 주장을 기재한 준비서면이나 증거서류는 반드시 그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비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적어도 다음 변론기일 10일 전 까지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증거서류는 미리 법원에 제출하거나 또는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제출하고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증거서류에 서증의 부호와 번호를 부여하 여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를 특정시켜야 한다.

(예: 갑제1호증-가족관계증명서, 갑제2호증의1-행정심판서 송부, 갑제2호증의2-결정)

또한 상대방으로부터 교부 받은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원고가 "인부"를 하여야 하는데 증거서류가 많고 복잡하며, 당사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다음 변론기일까지 검토하여 "인부서"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.

(예: 갑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-성립인정, 갑제2호증 확인서-부지)